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75 |
|----------|-----|

제출년월일 : 2000. 12.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는 첨단기술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생산, 연구, 주거단지와 자연이 조화된 첨단기술전원도시로서
- 첨단기술전원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미호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민간사업자 등이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위탁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내지 제10조)
- 입주업체의 오·폐수의 유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 입주업체의 부담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3. 의안전문 : 별첨

4. 첨부 : 관련법규 발췌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라 함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를 관장하는 충청북도지사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관리권자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청원군수가 사업자가 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시설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 등 비용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운영·관리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처리시설의 위탁) ① 관리권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에 위임·위탁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에 관한 사항등) ① 관리권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내용,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업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관리권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처리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 및 방법) 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리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리권자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수탁기간)**
-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관리공단등에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실적 등을 제출한 때에는 관리권자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관리권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이조례에 의한 관리권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기타 관리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자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0조 (위탁비용등)**
- ①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관리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수탁자는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④ 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오·폐수의 유입) ① 오·폐수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폐수의 유입, 배수설비의 설치, 오염물질, 배출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담대상자의 범위,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생활보전)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담금 등의 부과는 원인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關聯法規 (部分抜萃)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자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 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방지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①~② (생략)
-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용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부담금의 징수·부과)

- ① 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원인자에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방지사업의 종류)

-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2 ~ 6 (생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방지사업 실시능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4조(방지사업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위탁요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 제2항 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방지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한다.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가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종류·규모·사업지역·사업비, 예상원인자의 범위, 사업효과 및 재원조달계획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 (비용부담계획)

① 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